

Gaeseong Industrial Complex Guide

# 개성공단 길라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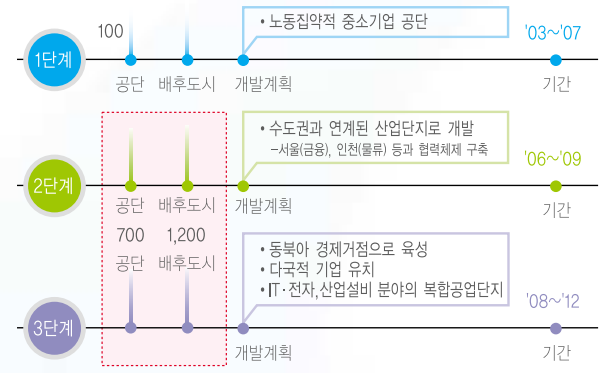
# CONTENTS

1. 개성공단 사업은  
개관  
04
2. 1단계 사업 어디까지 왔나  
추진현황  
06
3. 개성공단 기업환경은 어떠한가  
입지·기반시설  
08
4.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면 어떻게  
투자절차와 방법  
12
5. 개성으로 가는 길, 개성에서 오는 길  
인원·물자 왕래  
20
6. 개성현지 기업 활동은 어떻게  
개성현지 기업운영  
26
7. 개성공단 입주기업 활동 지원  
기업활동 지원  
34

# 1. 개성공단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활로를 개척하여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고,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하는 경제사업이자 평화사업입니다.

총 2,000만평(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을 3단계에 걸쳐 개발



개성공단사업 단계별 경제적 효과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2005. 1)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누계
남한	58억	130억	656억	844억
북한	13억	33억	103억	149억

(단위 : US\$)

▶ 개성공단 완공 후 매년 남한은 198억 US\$, 북한은 14억 US\$의 경제효과 예상

- 남한의 경제효과
  - 인건비 절감, 원부자재 판매,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
- 북한의 경제효과
  - 직접외화 획득, 공단 내 인프라 조성, 공장건축 효과 등

우선 1단계 100만평 개발사업이 2007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 치 : 개성시 봉동리 일원 100만평  
(개성↔평양 160km, 개성↔서울 60km, 북한한계선 1.5km)  
사업 기간 : 2003년 ~ 2007년 (2003. 6. 30 착공)  
건설 비용 : 2,205억원 (토공사금 1,110억원, 국고지원 1,095억원)  
사업 시행 : 한국토지공사/자금 · 설계 · 분양, 현대아산(주)/시공  
사업 상대 : 북측 아태 · 민경련

- 사업추진경과
- '00. 8. 22 현대-北아태간 개발합의서 체결
  - '02. 11. 27 北, 개성공업지구법 발표
  - '02. 12. 1 北,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증(50년) 발급
  - '03. 6. 30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거행
  - '04. 4. 13 토지임대차 계약 체결 (토공, 현대 ↔ 北중양특구총국)
  - '04. 4. 23 1단계 100만평 협력사업 승인 (통일부)
  - '04. 6. 14 시범단지 15개 기업 입주계약 체결
  - '04. 6. 30 시범단지 부지 조성공사 완료
  - '04. 9. 14 시범단지 건축공사 착공
  - '04. 10. 5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출범
  - '04. 10. 20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소
  - '04. 12. 15 공장가동 및 제품생산 시작

## 2. 1단계 사업 어디까지 왔나

Pilot project로 추진되고 있는 시범단지 2만 8천평에는 금년 중 15개 기업이 입주할 완료, 본격 가동됩니다.

2005년 7월 말 현재 4개 기업 가동, 9개 기업 공장건축 중, 시범단지 구조물 공사(상하수도, 도로포장 등) 98.9% 진행

- 2004. 12. 15 개성공단 리빙아트 공장준공 및 첫제품 생산 기념식 개최
- 2005. 3. 16 개성공단내 남측전력 공급 개시
- 2005. 3/4분기 남측 - 개성공단간 직통전화 및 FAX 개통 예정

2005년 7월 말 현재, 북측근로자 4,000여명(건설인력 포함), 남측근로자 500여명 근무

- 시범단지 완전 가동시 약 4,000여명, 1단계 본격 가동시 약 7만여명의 북측 근로자가 입주 기업에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

1단계 본단지 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 공사

- 2005년 7월 말 현재 78.3% 공정, 2006년 완료목표로 추진

기반시설 공사

- 용수·폐기물처리시설 등 현재 설계 단계, 금년 하반기 중 공사착수 예정, 2006년 말 완료목표로 추진

▶ 폐수처리장 착공(2005. 4. 29)

본단지 분양계획

- 금년 8월부터 1차 5만평을 시작으로 기반시설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양을 실시



### 3. 개성공단 기업환경은 어떠한가

개성공단은 우수한 입지, 양질의 노동력, 세제 혜택 등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입지여건

서울에서 60km, 인천에서 50km에 위치, 거대 소비처인 수도권을 배후지로 활용, 물류비 절감 가능

- ▶ 경의선 도로·철도 연결을 통해 인천공항, 인천항 활용 가능

평양에서 160km에 위치, 남북 경제협력의 전초기지 역할 수행

- ▶ 남북당국간 합의(2004. 6. 5)에 따라 「남북경협협회사무소」 설치 예정

향후 TCR(중국횡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과 연결,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 역할 전망

#### 운영여건

경쟁력 있는 양질의 노동력 확보, 저렴한 분양가

- ▶ 최저임금 月 57,5US\$ (사회보험료 7.5US\$ 포함 : 임금의 15%)
- ▶ 노동자들의 교육수준이 양호하고, 언어 및 문화장벽이 낮은 것도 이점
- ▶ 평당 149,000원에 분양(북측과의 토지임대차 계약체결일(2004. 4. 13)로부터 50년간 사용)

매력적인 세제 혜택

- ▶ 법인세의 경우, 10~14% (국내 13~25%, 중국 15%, 베트남 10~15%)이며, 다양한 감면 혜택
- ▶ 남북당국간 합의에 의해 북측에 세금을 낸 경우, 남측에서는 면제

남북 당국의 강력한 개발 의지

- ▶ 법·제도 마련, 투자자금 지원 등 남북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



## 기반시설

### 도로·철도

- 도로(4차선, 통일대교 북단 - 개성간 12.1km), 2004. 11. 30 완공
- 철도(단선, 문산 - 개성간 27.3km), 2005. 12월 말 완공 예정
  - ▶ 인천공항·인천항 활용, 동경, 홍콩, 상해 등 주요도시에 빠른 시간 내 접근 용이

### 전력·통신

- 전력(한국전력) : 시범단지(1.5만kW)는 배전, 본단지(10만kW)는 송전방식 공급
  - ▶ 2005. 3. 16 시범단지 전력공급 개시, 본단지는 2006년 말 공급 예정
  - ▶ 국내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각 기업에 공급
- 통신(KT) : 시범단지 100회선, 본단지 10,000회선 연결
  - ▶ 시범단지는 2005. 3/4분기 개통 예정, 본단지는 2006년 말 목표로 북측과 협의 진행
  - ▶ 문산 - 개성전화국 - 개성공단을 연결하며, 통신요금은 분당 40센트 수준

### 용수,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 용수 : 개성공단 1단계 지역 인근에 정·배수장(6만톤/일) 건설, 공급
  - ▶ 월고저수지(개성공단 북측 약15km)를 취수원으로 이용
  - ▶ 시범단지는 지하수(관정 개발) 사용
- 폐수 및 폐기물 처리 : 폐수종말처리장(3만톤/일, 8천평) 및 폐기물처리장(155톤/일, 1.5만평) 설치
  - ▶ 시범단지 내 폐수는 임시폐수처리장 설치·처리, 폐기물은 북측에 위탁처리
  - ▶ 본단지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은 1단계 지역 내 설치 예정

기타 기반시설 관련 문의사항은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건설지원과  
Tel 02) 3703-7454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물자 반출, 해외 판로 확보 등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극복해야 할 제약요인도 있습니다.

원자재, 공장설비 등 개성공단에 보낼 특정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따라 반출을 통제

- ▶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가 10% 이상 포함된 경우, 美 상무부 사전 승인 필요

주요시장인 미국, 일본, EU는 북한산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므로 판로 확보를 위한 업체별 자체 대책 마련 필요

- ▶ 단적으로 내수용 판매, 반제품의 국내 반입, 동남아 등 무역장벽이 낮은 곳으로 수출 방안 등 마련 필요
- ▶ 국제관례에 따르면,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대부분 '북한산'으로 판정될 가능성

## 4.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면 어떻게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먼저 전략물자와 원산지 문제에 따른 관료 확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전략물자/수출통제제품물 해당여부 검토

대량살상무기(WMD)의 제조·개발 등에 전용 가능한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며, 개성공단 반출을 위해서는 심사·판정 및 승인 절차가 필요

-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www.sec.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로그인 후 판정/허가지원 → 판정지원 → 자가판정지원 선택, '전략물자 판정/허가 시스템'에서 전략물자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

- 자가판정의 방법으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여부를 직접 의뢰하여 판정받아야 함.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접속 후 사전판정지원 참조)

무역협회 산하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Tel 02) 6000-5252~3

미국수출관리규정 (EAR)에 따라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가 10% 이상 포함된 제품을 개성공단에 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사전 승인절차가 필요

- 한·미간 별도 협의가 필요한 만큼 관련절차에 대해 통일부에 문의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과 Tel 02) 3703-7442(전략물자 전반)  
지원총괄과 Tel 02) 3703-7416 (미 EAR 관련)

### 원산지 및 관료 확보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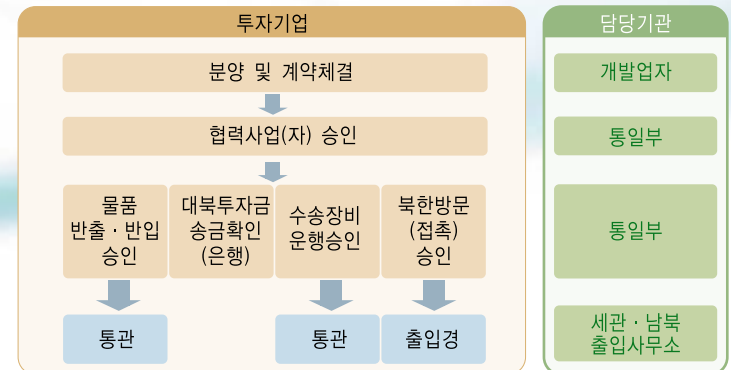
개성공단 수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에 관한 국제관례상 '북한산'으로 판정, 주요 국가로부터 관세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 유의

- 미국의 경우 북한산 제품에 대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등 사실상 수출이 어렵다는 점과
- 일본, EU의 경우 북한산 수출 품목에 따라서는 다소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 개별 기업 차원에서 단기간으로 내수용 판매, 개성공단 수출품에 대한 관세상 불이익이 없는 지역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시 남측으로 반입되어 싱가포르로 수출되는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키로 결정
- ▶ 한-EFTA 자유무역협정 체결시에도 역외가공방식을 활용한 개성공단 생산제품 (국내 원부자재 60% 이상 이용)에 대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 부여 결정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과 Tel 02) 3703-7442

개발사업자로부터 분양을 받고, 통일부로부터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후, 현지 투자, 방문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 분 양

본단지 분양대상 : 공장용지 62.8만평, 지원시설용지 5.8만평

- ▶ 1단계 100만평 중 공공시설용지 24.3만평, 시범단지 2.8만평, 유보지 4.3만평을 제외한 면적

분양기관 : 한국토지공사

분양일정 : 금년도 8월, 1차 5만평을 시작으로 잔여부지를 단계적으로 분양

- ▶ 시범단지의 경우, 2004년 5~6월 분양(분양가 : 149,000원/평)을 실시하였으며, 총 136개 업체가 신청하여 최종 15개 업체 선정

- 기타 분양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토지공사 개성사업처 분양팀  
Tel 031) 738-7479, 7565, 7419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분양시기 및 대상,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공고하는 분양공고문을 참고하십시오.

## 협력사업(자) 승인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 및 분양확인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남북교류협력시스템 (<http://inter-korea.unikorea.go.kr>)을 통해 신청

- ▶ 사업계획서에는 투자계획, 자금조달 운용계획, 생산·판매계획, 조직·인력계획, 반출물자, 추진일정 등을 포함

신청 후 15일 이내에 관계부처 협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승인여부 결정

- ▶ 승인담당기관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지원총괄과 Tel 02) 3703-7413

- 분양계약 체결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사업(자) 승인을 받으면 개성공단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완비됩니다.
-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승인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제정, 제출서류, 처리기한 등을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 시범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전략물자 심사 및 美 상무부의 수출통제품목 심사 절차를 거쳐에 따라 기업별로 협력사업 승인이 2004년 9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이루어 진 바 있습니다.

## 대북투자 신고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후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외국환거래 취급 은행)장에게 신고

- ▶ 대북투자신고서, 협력사업 승인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개성 현지에 현금을 송금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물품 반출입 승인

승인을 필요로 하는 물품 :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절차에 관한 고시」에 규정

- ▶ 컴퓨터, 전락물자 해당품목, 반입도서·미술품 등

방법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http://inter-korea.unikorea.go.kr>)에 승인 신청

- ▶ 승인담당기관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과 Tel 02) 3703-7443

승인 후 통관절차

- 물자 반출입시 남북출입사무소 내 세관에 수출입신고필증 (Packing List, Invoice 포함) 제출 후 검사 및 통관

- ▶ 수출입신고필증 : 관세사 대행을 통해 서울세관에서 발급

- 승인을 요하는 품목 이외에 개성에 오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통관시 수출입신고필증의 세관 제출 → 검사를 거쳐 반출입이 이루어집니다.
- 정부는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협력사업 승인 범위 내에서의 반출·반입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일부장관의 신고없이 반출·반입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협력사업용물품의 반출입 신고 제도」를 2005년 3월 23일 부로 폐지하였습니다.



## 남북한 반출입 금지 품목

- 남측 :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통일부고시 제99-1호)에 따라 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 규정

### ◎ 반입 금지 물품

-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 총포·도검 및 화약류 등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 기타 출입심사공무원이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한 규제 물품 및 이를 성분으로 한 의약품
- 호골, 웅담, 사향, 해구신 등

### ◎ 반출 금지 물품

- 군사상 기밀 및 남북 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 ◎ 반출·반입 제한물품

-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이 제한되는 물품
- 식품류 (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 검역대상 물품
  - 전락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에 의한 수출 규제 품목
  -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부칙 :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3호)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내 반출입 금지 품목 지정

◎ 반입 금지 물품

- 무기, 총탄, 폭발물 (공업지구 공사용은 제외), 군수용품, 흉기
- 쌍안경·망원경(배율 10배 이상), 사진기(160mm 이상의 고정 렌즈)
- 무전기와 그 부속품
- 독약, 극약, 마약 및 방사성물질, 유독성화학물질
- 사회질서와 민족의 미풍양속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출판인쇄물 또는 그 원고, 필름, 사진, 녹음녹화테이프, 소리판, CD, 미술작품, 수공예품, 조각품
-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들어오는 정해진 물품
- 반입금지 합의 물품
  - ▶ 핸드폰, 차량GPS장비, 무선기기, 저장장치, 캠코더 등 금지

◎ 반출 금지 물품

- 무기, 총탄, 폭발물, 군수용품, 흉기
- 무전기와 그 부속품
- 독약, 극약, 마약 및 방사성물질, 유독성화학물질
- 역사유물
- 기밀에 속하는 문건, 출판인쇄물(사본한 것 포함)과 그 원고, 필름, 사진, 녹음녹화테이프, 소리판, CD
- 반출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물품

공장설계 및 건설업체 선정

각 기업별로 시범단지 사례, 부측과의 협조 측면, 설계 및 건축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건설업체를 선정

- 시범단지 공장의 경우 평균 공사비는 평당 220만원(설계비 별도)으로 국내 건축비용보다 높은 편이었습니다.
  - 건축기간도 국내보다 20~30% 더 소요되었습니다.

## 5. 개성으로 가는 길, 개성에서 오는 길

개성공단 방문을 위해서는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및 차량운행 승인 등 사전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방북에 필요한 서류 구비

- 초청장(출입증)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신청
  - ▶ 초청장은 향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출입증으로 전환될 예정
  - ▶ 초청장(출입증) 신청기관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 Tel 02) 732-9722
- 방북증명서 : 초청장 발급 후 방문 예정 5일 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http://inter-korea.unikorea.go.kr>)에 발급신청서 및 신원진술서를 입력·신청
  - ▶ 방북증은 단수와 수시 2종이 있으며, 수시방북증은 증명서 유효기간 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통일부가 승인한 방북기간 내 방북 신고 후 재사용 가능
  - ▶ 방북증명서 발급기관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지원총괄과 Tel 02) 3703-7413
  -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흥국생명빌딩 18층에 위치(오시는 길 : [www.kidmac.com](http://www.kidmac.com) 참조)

- 구체적인 방북일자가 정해지면, 방북 3일 전 ① 출입계획서 ② 「개성공업지구 출입인원 및 차량현황(북 출입국사업부 통보용)」을 작성합니다.
  - 출입계획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http://inter-korea.unikorea.go.kr>)에 입력
  - 「개성공업지구 출입인원 및 차량현황」 : 소정 양식에 작성, 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kaesongseoul@naver.com)에 이메일 송부
- 최초 방북시에는 방북 안내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교육 신청 및 교육 일자 안내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Tel 02) 3703-7413, 7433
  - 교육 장소 : 통일부 통일교육원(강북구 수유동 소재)
- 개성공단 상주인원을 위해서 특별 방북 안내교육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매월 15일)
- 수시방북증명서 소지자 북한방문신고는 출입계획서 제출로 같습니다.

물자와 인원수송을 위한 차량운행 준비

- 수송장비운행승인서 : 차량운행 5일 전 남북교류협력시스템 (<http://inter-korea.unikorea.go.kr>)에 수송장비운행 승인 신청
  - ▶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운행계획서 등
  - ▶ 발급기관 :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교역과 Tel 02) 3703-2363~4
- 통행차량증명서 : 수송장비운행승인서 입력시 자동으로 신청 처리됨.
  - ▶ 신청·발급기관 : 관세청(서울세관) Tel 02) 3438-1142
  - ▶ 개성공단 출입시 남북출입사무소 내 세관에 통행차량증명서를 제출하고 차량출입을 위한 출입경 심사인을 날인 받아야 함.

• 승인신청 처리기간 기존 30일 → 5일로 단축, 운행승인 유효기간 부정기 1년, 정기 2년으로 확대(2005. 6. 13), 통행차량증명서 인터넷 발급(2005. 7. 4 시행) 등 수송장비운행 승인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기타 준비사항

- 개성 현지에서는 달러화만 통용, 개성공단 내 국내은행 지점에서 환전 가능
    - ▶ 미리 환전하여 달러화를 소지하고 개성을 방문하는 것도 무방
  - 개성 현지에서 숙박이 필요한 경우, 출입계획서 제출 이전에 미리 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연락, 숙박 가능 여부를 확인
  - 개인 세면도구 등은 가급적 지참, 공단내 편의점에서 간단한 물품은 구입 가능
- ※ 외국인은 방북 증명서 없이 북측의 초청장만으로 개성방문이 가능합니다. (여권으로 출입심사)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북측 초청장 발급 신청
  -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발급받은 후, 방북 3일 전까지 출입계획서 및 「개성공업지구 출입인원 및 차량 현황」을 작성, 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에 통보

## 개성공단에 갈 때에는

방북증명서 등을 필히 소지하고, 남북 출입사무소에 도착하여 출입·세관·검역 심사를 거쳐 지정차량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개성공단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운행 : 1일 왕복 1회, 주 6일(월~토요일)
- 현대 계동사옥(비원주차장)에서 07:40 출발(요금 편도 8,000원)
  - ▶ 셔틀버스 이용 문의 : 현대아산(주) 출입팀 Tel 02) 3669-3676

사전에 승인된 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방북 당일 출입계획서상 MDL 통과 1시간 전까지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

- 통일대교 앞에서 우리 군당국의 간단한 인원확인을 거친 후, 남북출입사무소에서 하차, 수속을 받게 됩니다.
  - 출입심사·세관심사를 위해 출입신고서와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 검역(필요시 검역증을 제출) → 세관검사(반출입의 경우 출발보고서, 차량운행자는 통행차량증명서 제출) → 출입심사(출입신고서 제출)
- 남북관리구역(DMZ 중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한 남북연결통로)을 지날 때 우리 군당국과 북측 군부의 호송을 받아 북측 출입사무소에 도착합니다.
- 남측 통일대교 통과 후 이동 중에는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은 금지됩니다.

북측 출입사무소 출입심사 및 세관심사시 유의사항

- 핸드폰, 차량 GPS 장비, 각종 CD, 테이프 등 무선기기 및 저장장치, 북측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건·책자, 쌍안경·망원경(10배 이상), 카메라(160mm 이상 부착), 캠코더 소지 불허
- 북측 세관원의 질문에 정중히 답변하고, 북측 세관원이 물품이나 가방을 열어 볼수 있다는 점에 유의

• 북측의 초청장 없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출입증으로 개성 방문이 가능해지면, 7일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은 개성공단 도착 48시간 내에 북측 출입사업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귀환시에도

개성공단엔 갈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증명서를 필히 소지하고, 북측 출입사무소에 도착, 출입·세관·검역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개성공단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운행 : 1일 왕복 1회, 주 6일(월~토요일)
- 현대아산(주) 개성사무소에서 15:40, 관리위원회에서 15:50 경 출발
  - ▶ 사전에 필히 탑승시간과 장소를 확인

사전에 승인된 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방북 당일 출입계획서상 MDL 통과 1시간 전에 북측 출입사무소에 도착

- 개성공단에서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 개성공단 내 북측 세관에 반출입 신고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 외화는 제한 없이 반출입할 수 있으나, 귀금속과 보석은 신고해야 합니다.
  - ※ 북측 출입사무소에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아리랑매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측 세관에서 1인당 주류 1병으로 제한하고, 일부 반입을 불허하는 품목도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측 출입사무소 도착, 세관신고시 유의사항

- 북한방문증명서(단수)는 귀환시 반납하고, 수시 북한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반납
- 북한산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 북측의 원산증명서 없이도 반입자의 원산지신고에 대해 세관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확인을 같음(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원산지 신고서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



## 6. 개성현지 기업 활동은 어떻게

개성현지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우선 관리위원회에 기업창설 승인신청, 승인 후 기업등록, 세관·세무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 관리를 위해 북측의 개성공업지구법(제24조) 및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 규정에 의해 설립된 북측기관으로서, 남측의 인력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 개성 현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각종 인·허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업창설 및 등록

#### 기업창설 승인신청

- 입주기업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기업창설승인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 ▶ 첨부서류 : 기업창설신청서, 협력사업 승인서 사본, 기업규약 등
- 관리위원회에서는 10일 이내에 승인여부 결정

#### 기업등록

- 입주기업은 등록자본(총투자액의 10% 이상) 또는 그 이상 액수를 투자한 후 관리위원회에 기업등록 신청
  - ▶ 첨부서류 : 기업등록신청서, 기업창설승인서 사본, 토지이용권등록증 사본, 투자실적확인 문건
- 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기업등록증 발급

#### 세관 및 세무등록

- 기업등록 후 20일 이내에 공업지구세관에 세관등록, 공업지구세무소에 세무등록
  - ▶ 현재, 세무등록은 북측 공업지구세무소 본격 운영시까지 관리위원회가 대행

개성공단 내 기업경영 활동은 북측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과 「노동규정」, 「세금규정」 등 하위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부동산·건축

토지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은 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분양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이용권 등록신청서를 제출

- 관리위원회가 신청기업에게 토지이용권 등록증을 발급

▶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날부터 토지이용권 취득

공장 건축은 관리위원회에 건축허가신청서와 착공신고서를 작성·신청하고, 관리위원회가 건축허가, 착공허가를 통보

- 전기·소방·가스설비 등에 대한 준공전 검사, 준공검사, 준공공사 승인서 발급, 건축대장 등재, 공장등록 등의 순서로 진행

▶ 시범단지의 경우, 건폐율 50%, 용적률 100%, 4층 이하, 대지면적의 15% 이상의 조정, 주차장 설치 등을 공장건설 기준으로 적용

신축 건물에 대해 관리위원회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검사증과 토지이용권 등록증을 첨부하여 건물소유권 등록신청서를 제출

- 관리위원회가 신청기업에게 건물 소유등록증을 발급

▶ 신축 건물의 경우 준공검사 합격일, 분양·양도 건물은 관리위원회 등록일부터 건물 소유권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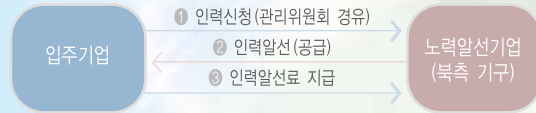
• 토지 및 건물 이용기간 내 토지이용권, 건물소유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임대, 저당이 가능합니다.  
- 관리위원회에 등록수수료 납부, 양도·임대·저당 등록

• 부동산 소유자 사망시 재산상 관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 관리위원회에 상속등록을 하면, 상속부동산에 대한 양도, 임대, 저당 가능

• 토지공사로부터 분양 받은 후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는 매년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토지사용료는 관리위원회와 북측 지도총국이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

## 노무관리

### 인력 채용 및 해고



- 각 기업별로 직무별 필요인원을 문서로 작성하여 관리위원회를 경유, 복측 노력알선기관에 신청함으로써 입주기업과 복측 노력알선기관간 협의를 진행
- 입주기업과 노력알선기관간 노력알선계약을 체결하여 인력을 공급 받은 후, 입주기업과 복측 종업원간 노력채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용
- 해고시에는 당사자에게 30일 전까지 사유를 통보하고 해고종업원 명단 및 해고사유를 노력알선기업에 제출
  - ▶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해고 조건, 해고할 수 없는 조건 등 규정

- 노력알선에 대하여 채용 1인당 17US\$의 노력알선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필요시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 근로자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임금

- 월 지급 최저임금 : 57.5US\$(임금의 15%인 사회보험료 7.5US\$ 포함)
- 인건비 상승률 : 연 5% 미만
- 지급방식 :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이 원칙이며, 현재 복측과 직접 지급의 시행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 중
- 노동시간 : 주 6일제 48시간
  - ▶ 연장 및 야간근무 : 기준급여의 50% 추가 지급, 공휴일 근무 : 기준급여의 100% 추가 지급
- 휴가
  - ▶ 정기휴가 年 14일, 보충휴가 2~7일 (유해업무 종사자)
  - ▶ 출산 휴가 : 150일(유급 60일)

노동보호 : 기업은 산업위생조건 보장 및 노동안전시설 구비 의무

## 세금

개성공업지구의 세금은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등으로 분류

### 세율 및 감면제도

구분	납세의무자	과세기준	세율	감면제도
기업 소득세	개성공단에서 소득을 얻은 기업	결산이윤	14% (일반업종) 10% (경공업, 하부구조, 첨단과학 등 장려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려·생산 부문 투자 : 15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은 이윤발생년도부터 5년 면제, 이후 3년 50% 감면</li> <li>서비스부문 투자 :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은 이윤발생년도부터 2년, 이후 1년 50% 감면</li> <li>이윤 재투자 : 3년 이상 운영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의 70%를 다음년도 세금에서 감면</li> </ul>
개인 소득세	개성공단에 182일 이상 체류하며 소득을 얻은 개인	월 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이 500 US\$ 이상일 경우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 당국 협정에 의한 소득 면제</li> <li>복측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 예금이자와 보험금 또는 소득 면제</li> <li>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비거주자 예금의 이자소득 면제</li> </ul>
재산세	매년 1월 1일 현재 공단 내 영구 건물 소유자	건물 용도별 취득시 현지가격	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건물소유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li> </ul>
상속세	공단 내 재산을 상속받은 자	세금규정에서 정한 지출을 공제한 금액의 상속 재산액	6%~25%	-
거래세	생산부문의 기업	생산물 종류별 판매 수익금	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제품을 남측 혹은 다른나라에 수출할 경우 면제</li> </ul>
영업세	서비스부문의 기업	건설, 금융 등 부문 별 서비스 수입금과 건설물인도 수입금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부구조 부문 기업 면제 (전기, 가스, 용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li> </ul>
도시 경영세	개인 및 기업	월노동총액 또는 월수입총액	0.5%	-
지방세 자동차 이용세	매년 1월 1일 현재 공단 내 자동차를 소유한 기업 또는 개인	자동차 종류	3~60 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일 이상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미사용 기간 면제</li> </ul>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2003. 8. 20 발효)에 의해 입주기업 발생소득에 대해서는 남북 중 일방에서만 과세되며, 남측에서는 소득세·법인세·소득할증주세, 북측에서는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외환 · 금융 · 회계

개인 및 기업은 제한 없이 외화를 보유하거나 은행에 예금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공업지구 이외 지역으로의 입출금이 가능

- 귀금속 이외의 외화는 세관신고 없이 반출입이 가능, 이윤 및 소득의 송금은 비과세
  - ▶ 기준화폐는 US\$이며, 각 기업은 기준화폐로 모든 회계를 처리
  - ▶ 외화범위 : 전환성외화 현금, 전환성외화로 표시된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수표 등 지불수단, 귀금속 등
- 개성공업지구 내 설립된 은행에서 외화계좌를 개설

- 개성공단 내에 우리은행이 입점 (2004. 12. 1)해 있습니다
- 관리위원회에 계좌개설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내 은행이나 외국 은행에도 개성공단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매 반기 계좌별로 외화수입 지출문건을 작성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성 현지법인은 국내 모기업과 독립된 회계단위로 처리

-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 따라 US\$로 계산
  - ▶ 현재 북측과 관리위원회가 국제관례와 방식에 준하여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회계규정 및 세부규정(안)을 마련 중

## 보 험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은 북측 지도총국이 지정한 공업지구 보험회사에 보험가입

- 세부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북측 지도총국과 관리위원회가 협의 중
  - ▶ 북측은 개성공업지구 보험사업자로 '조선국제보험사(KFIC)' 선정 (2005. 1. 26)
  - ▶ 남측 보험회사와 협력을 통해 보험 지급능력 확보 등 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 중

### • 의무보험 대상

- 화재, 폭발, 자연재해로 건물 및 기계장치에 생긴 물질적 손해
- 가스사고로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
-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 부상당하게 하거나 제3자의 재산에 입힌 손해
- 종업원이 노동과정에서 재해로 입은 손해

## 물자 관리

관세 면제

- 개성공단 내 반출입 물자와 북측의 기관·기업소·단체에 위탁 가공하는 물자는 관세를 면제
  - ▶ 단,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물자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공업지구 밖 북측 영역에 판매하는 경우 관세 부과

### • 국내에서도 원산지가 북측인 반입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세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 확인

- 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은 반입자의 신고에 대한 우리측 세관의 확인으로 같음
  - ▶ 남측에서 개성공단으로 물품을 반입할 때에는 남측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북측 세관에 제시 (개인 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500유로 이하), 100유로 이하의 교역물품, 우편물은 원산지 증명서 면제)



### 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 표기

- 국내에 반입,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및 통행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2005. 3. 10 시행)에 따라 한국산 또는 북한산으로 표시
  - ※ 국내 투자지분과 국내산 직접재료비 비중이 60% 이상인 경우에 국내산으로, 이외의 경우 북한산으로 판정
  - 국내산인 경우, Made in Korea, Made in Korea (Gaeseong), 한국산 등으로 표시
  - 북한산인 경우, Made in DPRK (Gaeseong), 북한산(개성) 등으로 표시
- 다른 나라로 수출될 물품인 경우, 수입국별 원산지 규정과 기준에 따라 판단

-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내수, 반제품 국내반입 후 완제품 생산, 동남아 등 무역장벽이 없는 곳으로 수출 등 업체별 대처가 필요합니다.
- 정부는 앞으로 미국·일본 등에 수출 가능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한-싱가포르 FTA(자유무역협정)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산과 동일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타국가와 FTA협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개성공단에는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각종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현재 관리위원회 사무동 별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 증대에 따라 공공·편의 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

### 환전·송금

우리은행 개성지점 : 입출금 및 계좌관리



### 편의점

웨이리마트 : 국내 음식료품, 주류·담배, 생필품 판매 (US\$ 사용)

▷ 08:00~20:30 영업



### 의료

그린닥터스 개성병원 : 응급 진료 (의사, 간호사 상주)

▷ 국내 의료보험 적용, 간단한 처치의 경우 무료 진료

-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 출입기관과 군당국의 협조를 얻어 일산·파주지역 종합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구조체계를 마련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 숙식

식당 : 아라코(주) 운영 구내식당(아침·점심·저녁 제공, 1식 4US\$)

▷ 현대아산(주) 협력업체 인원, 현대아산(주) 복지회관 식당(1식 4US\$) 이용

숙소 : 관리위원회 게스트하우스(1박 30US\$)



### 소방안전

관리위원회 소방대 운영 : 소방차 1대, 소방요원 2명



개성현지 기업운영

## 7. 개성공단 입주기업 활동 지원

남북당국간 각종 경험관련 합의서와 관련 규정 제정,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각종 지원으로 더욱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합니다

### 지원체계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구성 : 개발업자(현대아산(주), 한국토지공사)가 추천한 남측 인원들로 구성
  - ▶ 개성공단 관리를 위해 복측 개성공업지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설립된 복측 기관 (개성 5부, 서울 1사무소)
- 기능 : 공단관리, 각종 인허가 서비스 제공, 투자·경영활동 지원

#### • 관리위원회 임무

- 투자조건인 조성과 투자유치
- 기업의 창설 승인, 등록, 영업허가
-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 토지이용권, 건물, 운전기재의 등록
-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 하부구조 시설의 관리
- 공업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 발급
- 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업준칙 작성
- 기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 위임 사업

-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 Tel 02) 732-9722 ~ 9731, FAX 02) 732-4080  
홈페이지 : <http://www.kidmac.com>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 통일부, 산자부, 건교부 등 8개 부처 참여, 4개과로 구성
- 각종 제도 수립, 입주기업 지원 등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정부가 처리할 모든 사항을 지원단에서 창구를 일원화하여 처리

####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임무

- 개성공단 사업 지원정책 수립 및 총괄 조정
- 개성공단 통행·통관, 노무관리, 공단운영 등 법적·제도적 절차 지원
- 개성공단 개발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 수립
- 개성공단 건설공사와 관련된 지원대책 수립

▶ 지원총괄과 : Tel 02) 3703-7413, FAX 02) 3703-7490

▶ 운영지원과 : Tel 02) 3703-7433~7434, 7437, FAX 02) 3703-7495

▶ 투자지원과 : Tel 02) 3703-7441~7444, FAX 02) 3703-7491

▶ 건설지원과 : Tel 02) 3703-7451~7454, FAX 02) 3703-7491



## 남북간 합의서

남북당국간 경제관련 4대 합의서 발효(2003. 8. 20)

-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절차, 청산결재 등  
개성공업지구 통행·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

-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2002. 12. 8)

-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2004. 1. 29, 남측인원 신변안전 포함)

원산지 확인 절차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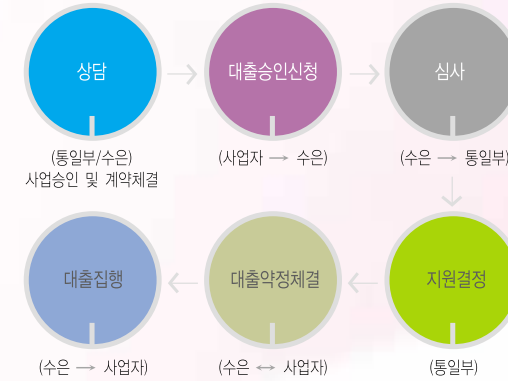
-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2003. 7. 31)

### • 북측 제정,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 (2005. 6월말 현재)

-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 개성공업지구 기업 창설·운영규정
-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
-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
-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 외환관리규정, 광고규정
-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 남북협력기금 대출

대출 절차



▶ 수은 : 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기관)

대출 종류

- 투자자금대출

- ▶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90% 범위 내
- ▶ 대출기간 : 10년 이내 (거치 5년 이내)
- ▶ 상환방법 : 연 2회 이상 정기균등 분할 상환

-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 ▶ 대상요건 : 일정 신용등급 이상, 1년 이내 공장착공이 가능해야 함.
- ▶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70% 범위 내
- ▶ 대출기간 : 2년 이내
- ▶ 상환방법 : 분할 또는 일시 상환

- 운전자금대출

- ▶ 대출금액 : 북한소재 법인의 1회전 운전자금
- ▶ 대출기간 : 1년 이내 (1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
- ▶ 상환방법 : 일시 상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제10차 회의

시 소

1997. 1. 9 - 7. 12

개성공단 소재 자산(토지이용권, 건물, 공장저당)의 담보인정

- 담보 인정범위

	자산평가액	담보평가비율
공장부지	취득가	70%
건물	분양가 90%	60%
기계·설비	감평가 또는 조사가액 (단, 구입가 이내)	40%

- 후취담보방식 대출 : 대출금으로 건설·구입 예정인 공장·설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사기간 중 신용 대출로 취급

- 소요자금의 70% 범위 내
- 후취담보평가비율 : 토지이용권·건물 50% 이내, 기계설비 30% 이내
- 공사기간 중 양도담보 취득, 완공 후 저당권 설정

대출이자율

- 이자율 결정 : 기준금리 + 신용위험가산율 - 중소기업할인율

- 기준금리 : 국고채 유통수익률
- 신용위험가산율 : 담보 및 신용도에 따라 △ 1.0~0.5% 포인트
- 중소기업할인율 : 0.5% 포인트

- 대출승인 시점에서 고정금리 적용

▶ 기금 지원 관련 문의

통일부 남북협력기금과 Tel 02) 3703-2367, 2478(기금지원 전반)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과 Tel 02) 3703-7443(각종 지원제도)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 Tel 02) 3779-6635, 6636(기금대출)

손실보조제도

대북투자사업자가 투자자 귀책사유가 없는 비상위험 등의 사유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90%까지를 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제도

▶ 담보하는 위험 : 수용·송금·전쟁·약정불이행 위험 등

약정절차



약정기간 : 10년 이내에서 신청자가 결정

약정금액 : 약정가액 (계약·투자금액) × 90%

약정한도 : 기업당 20억원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약정신청시기 : 투자금의 송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

효력발생 : 손실보조수수료 납부 후

- 손실보조 수수료 = 약정금액 × 손실보조수수료율 (0.7% 이하)

▶ 손실보조 수수료는 1년 단위로 납부하며, 중소기업은 25% 할인

지급절차 :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은 소정의 사고조사 및 심사절차를 거쳐 3개월 내에 손실보조금 지급

▶ 손실보조제도 관련 문의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운영지원과 Tel 02) 3703-7436(손실보조제도 전반)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 Tel 02) 3779-6625, 6639(손실보조 약정)

## 개성공단 Network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웹주소	
개성공단 지원업무 총괄	업무총괄, 방문승인 협력사업승인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지원총괄과	02-3703-7413	http://www.unikorea.go.kr
	통관·통행, 노무, 법률·제도, 세금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운영지원과	02-3703-7433	
	자금대출, 기술/편로지원 전략물자, 원산지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과	02-3703-7443	
	기반시설 건설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건설지원과	02-3703-7454	
북측초청장 또는 출입중, 현지 개성공단 관련 업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	02-732-9722	http://www.kidmac.com	
시행(분양)	한국토지공사	031-738-7565	http://www.iklc.co.kr	
시공	현대아산(주)	02-3669-3881	http://www.hdasan.com	
통관·통행	통일부 교류협력국 교역과	02-3703-2363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031-954-5520 5504	http://www.unikorea.go.kr	
	관세청 서울세관	02-3438-1142	http://seoul.customs.go.kr	
기금	통일부 남북협력기금과	02-3703-2367	http://www.unikorea.go.kr	
	한국수출입은행	02-3779-6625	http://www.koreaexim.go.kr	
전략물자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02-6000-5393	http://stic.kita.net	
원산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02-3460-7415	http://www.kotra.or.kr	

MEMO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